

고병원성 AI 예방을 위한 당부사항



김대균
농림축산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장)

“올 한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겪었다. AI예방을 위한特效약은 없다. 차단방역 수칙을 매일, 매시간 지키는 것이 최선이자 최고의 방법이다. 외부인의 출입 통제, 축사별 장화 갈아 신기, 야생조류 차단막 설치와 구서작업, 농장 내외부 소독 실시 등을 올바른 방법으로 실천하여야 한다. 오늘, 아니 지금부터”

2014.1.16 목요일. 전북 고창군 소재 종오리 농가를 시작으로 전국적인 발생양상을 보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해 전국적으로 천만수가 넘는 닭·오리 등이 매몰되었고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는 실로 막대하였다. 그리고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뀐 9월이 되어서야 전남 함평을 마지막으로 AI 발생으로 인해 취해진 방역대와 이동제한을 해제하였다.

하지만, AI 재발방지를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수차례의 토론과 조율을 통해 마련한 “AI 방역체계 개선방안”의 주요 대책을 제대로 추진하기도 전인 9.24일 전남 영암의 육용오리농장에서 HPAI가 또 다시 발생하였다. 이후 전남의 영암, 나주, 곡성, 화순 등의 오리농장과 전통시장에서의 예찰을 통해 토종닭 등에서 추가적으로 AI가 발생하였다. 한편, 전북 김제의 종오리농장에서 의심축 검사 결과 또 다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

되어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방역대책을 추진중에 있다.

올해 초 국내 철새도래지에서 위치추적기(GPS)를 부착한 청둥오리가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인 중국, 러시아 등지에 체류하다가 10월부터 국내에 도래하면서 방역당국은 야생철새에 대한 예찰검사를 강화하고 축산농가에 대한 방역지도와 교육을 강화하는 등 대응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11.6일에 독일의 북동부 지역의 칠면조농장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혈청형인 H5N8형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발생농장을 비롯한 3km 보호지역 내 가금을 모두 살처분하였다. 이후, 네덜란드(14.11.17.)의 양계장에서는 사육중인 15만수를 살처분하였고, 72시간의 일시이동중지(Standstill)를 시행하였다. 비슷한 시기에 영국(14.11.14.) 요크셔지방의 오리농장에서도 같은 혈청형의 AI가 발생하였다. 이들 국가는 공통적으로 과거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인한 상당한 피해를 입은 바 있어 확산차단을 위한 방역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 영국 BBC 보도에 따르면, EU 관계자는 최근의 발생이 야생철새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면서 EU내 다른 국가로의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생국가의 수출 금지 등의 조치와 축산농가에서 차단방역 강화를 요청하였다.

과거 4차례의 발생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 2014년 발생은 여러 면에서 다른 양상을 보였다. H5N8형 AI 바이러스는 과거 국내에서 발생하였던 H5N1형 바이러스와 비교하여 닭·오리에서의 폐사율이 다소 낮으며 전파속도가 느려 감염된 가축의 임상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초기 신고가 늦어지는 이유가 되기도 하였다. 한편, 전국적으로 야생철새 도래지와 인근의 가금사육농가를 중심으로 AI가 발생하였고, 발생기간이 장기화되면서 기존의 발생농장에서 재입식 후 다시 발생하는 경우도 여러 차례나 있었다.

현재까지의 역학조사 결과 초기발생은 야생철새에 의해 바이러스가 우리나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철저한 세척·소독 없이 출입하는 사람들과 물품, 감염된 가축의 이동 및 쥐 등 야생조수류에 의해 AI에 감염된 야생철새의 분변 등이 농장 안으로 유입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계열사를 통한 수평, 수직전파로 인해 짧은 시간 내에 광범위한 지역으로 질병이 확산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9.24일 두 번째 발생은 초기 발생한 농가에서 사후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재발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발생농장의 철저한 사후관리와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계열주체는 자체방역 대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현재 전·남북 지역에서는 AI 종식을 위한 방역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중국, 러시아 등 AI 발생국가에 머문 철새들이 국내로 유입하는 시기가 본격화되고, 우리나라와 인적·물적 교류가 많은 유럽지역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는 만큼 우리는 AI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최근 방역당국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차단방역 수칙을 책자, 포스터, 리후렛 등으로 제작하여 가금사육 농가에 배부하였다. 어느 것이든지 전체 내용을 일독하기를 권한다. 그리고 우리 농장의 상황은 어떠한지 냉정하게 점검하고 개선하여 실천하여 습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아래의 방역수칙을 되짚어보며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 가금 사육농가에서 지켜야 할 차단방역 준수사항 □

1. 농장 출입자 및 차량 등에 의한 전파 가능성 차단

- 농장입구에서의 출입차단 및 통제, 출입차량과 출입자에 대한 충분한 소독, 축사별 전용장화 사용과 발판소독조 비치 및 전실의 설치

2. 의심증상 발견 시 즉시 신고

- 매일 사육가금의 상태를 관찰하여 의심증상(발병초기 침울·졸음, 안면부 심한 부종·괴사, 닭벼슬 출혈 및 다발성 괴사, 폐사 등)이 있을 경우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

3. 야생철새, 쥐 등 야생동물에 의한 바이러스 유입 차단

- 농장 주변에 차단막(그물망) 설치, 환풍구, 축사 모퉁이의 틈 제거, 축사 주변이나 농장 주변에 사료 찌꺼기, 잔반 등 제거, 가금 폐사체나 분변 등을 철저히 제거하고 주기적인 살충·구서(쥐잡기, 쥐잡이통)를 실시

4.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관리

-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방역 관련 예방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차단방역 수칙을 생활화하도록 지도